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78 발의연월일: 2025. 3. 31.

발 의 자:백혜련・이수진・김준혁

이병진 • 이기헌 • 박홍배

허 영・남인순・진선미

전진숙 · 이재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정법원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,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고,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,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,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

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,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 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, 피후견인을 보 호·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(안 제924조의2 등).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에 한정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, 자녀의 친족,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 하여 결정한다.
-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, 모, 자녀, 자녀의 친족,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925조의2제1항 중 "제924조의2"를 "제924조의2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924조의2"를 "제924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제925조의3 중 "제924조의2"를 "제924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제926조 중 "제924조의2"를 "제924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제927조의2제1항제1호의3 중 "제924조의2"를 "제924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제932조제2항 중 "제924조의2"를 "제924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제946조 중 "제924조의2"를 "제924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양육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9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
시행 전에 양육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에
따라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924조의2(친권의 일부 제한의	제924조의2(친권의 일부 제한의			
선고) (생 략)	선고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			
	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			
	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에			
	한정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하			
	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			
	녀, 자녀의 친족, 검사 또는 지			
	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			
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히				
<u>정한다.</u>				
<u><신 설></u>	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			
	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			
	경우에는 부, 모, 자녀, 자녀의			
	친족,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			
	장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			
	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			
	<u>수 있다.</u>			
제925조의2(친권 상실 선고 등의	제925조의2(친권 상실 선고 등의			
판단 기준) ① 제924조에 따른	판단 기준) ①			
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				
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, <u>제924</u>	<u>제924</u>			
<u>조의2</u> 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	<u> 조의2제1항</u>			

한,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·재	
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	
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	
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	
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	
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	
시 정지, <u>제924조의2</u> 에 따른 친	
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	
에 따른 대리권·재산관리권의	
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	
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	
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	
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	
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	
제925조의3(부모의 권리와 의무)	7
제924조와 제924조의2, 제925조	
에 따라 친권의 상실, 일시 정	
지,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	
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	
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	
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	
지 아니한다.	_
제926조(실권 회복의 선고) 가정	/

법원은 제924조, <u>제924조의2</u> 또

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

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, 자

2
<u>제924조의2제1항</u>
,
제925조의3(부모의 권리와 의무)
제925조의3(부모의 권리와 의무) <u>제924조의2제1항</u>
<u>제924조의2제1항</u>
<u>제924조의2제1항</u>
<u>제924조의2제1항</u>
<u>제924조의2제1항</u>

녀, 자녀의 친족, 검사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 하여 실권(失權)의 회복을 선고 할 수 있다.

제927조의2(친권의 상실, 일시 정 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)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, 양부 모(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 다)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제1호의 3.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 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 된다.

1. • 1의2. (생략)

1의3. <u>제924조의2</u>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 우

2. ~ 4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927조의2(친권의 상실, 일시 정
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
지정 등) ①
<u>.</u>
· 1.•1의2. (현행과 같음)
1의3. 제924조의2제1항
190. <u>4 024229 24 16</u>
- 9 4 /처체코 가ბ\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
제9323	조(미성년후견인의	선임)	1
(생	략)		

② 가정법원은 제924조, 제924 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 의 상실, 일시 정지, 일부 제한 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 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 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 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 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다.

③ (생 략)

제946조(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7 후견)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<u>제</u> 924조의2, 제925조 또는 제927 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 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.

제932조(미성년후견인의 선임) ①
(현행과 같음)
② <u>*1924</u>
조의2제1항
③ (현행과 같음)
제946조(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
후견)제
924조의2제1항
·